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안 제2조의4 신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신청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전환 거부신청서’ 서식을 정의하고 해당 거부신청서 제출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2조의5 신설)

- 1) 사회복지시설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함.
- 2) 통합사례관리, 통합서비스 등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3)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를 받아 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구체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3 및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
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영 제9조제2항”으로 한
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맞춤형 급여 안내)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맞춤형 급
여 안내 신청을 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맞춤형 급
여 안내 거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
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연계·협업되는 사례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관련 사례관리, 같은 법 제38조의 자립지원 관련 사례관리, 같은 법 제49조의 가정위탁 관련 사례관리
2.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관련 사례관리,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례관리
4.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및 같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례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6.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원 관련 사례관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례관리

③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대상자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조의2 관련)

1. 인력 기준

- 가. 신청지원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나. 업무담당자는 신청지원에 필요한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시설 · 장비 기준

- 가. 업무담당자가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신청자를 위한 대기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 나. 신청지원 업무를 위한 통신설비 및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거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전환에 대한 거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사항

1.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 모두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은 추후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u>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u> <u>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u>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 <u>제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u> <u>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의</u> <u>지정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u>
<u>제1조의2·제1조의3 (생 략)</u>	<u>제1조의3·제1조의4 (현행 제1조</u> <u>의2 및 제1조의3과 같음)</u>
제2조(지원계획) <u>「사회보장급여</u> <u>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u> <u>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u> <u>“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u> <u>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u> <u>식에 따른다.</u>	제2조(지원계획) <u>영 제9조제2항--</u> ----- ----- ----- ----- -----.
<u><신 설></u>	<u>제2조의4(맞춤형 급여 안내) 법</u> <u>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맞</u> <u>춤형 급여 안내 신청을 거부하</u> <u>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u> <u>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거부신</u> <u>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u>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u> <u>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조의5(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u>

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연계·협업되는 사례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에

다른 피해아동보호 관련 사례 관리, 같은 법 제38조의 자립 지원 관련 사례관리, 같은 법 제49조의 가정위탁 관련 사례 관리

2.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관련 사례관리,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례관리

4.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및 같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례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6.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원 관련 사례관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례관리

③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u>별표</u>와 같다. ② (생략)	<u>대상자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한다.</u>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① ----- ----- <u>별표 2</u>-----. ② (현행과 같음)
--	---